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6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윤영석・이인선・서지영

곽규택 • 조경태 • 구자근

김태호 · 서일준 · 정동만

박대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 공급 안 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. 현재 공공주택 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 고 있으나,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금 부족으 로 인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한편, 현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형태로 공공임대 등 공 공주택공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. 또한, 현행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국고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배당 의무가 없는 자본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기할 수 있음. 이에 「주택도시기금법」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금 보조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용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 로써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게 출자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출자금 보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의 주	제9조(기금의 용도) ①
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	
사용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
	지방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
	는 경우 해당 공사에게 출자
	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
	<u>자금 보조</u>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